

# 농촌태양광사업 참여방법 안내

## 1. 목 적

- ‘농촌태양광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.)은 농촌 태양광사업의 기준 및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지원주체들의 역할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

## 2. 배경 및 의의

- 그간 대다수의 태양광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외지인에게 부지 임대 정도에 그쳐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고, 정보 및 자금 부족 등으로 태양광 사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
- 반면, ‘농촌태양광사업’은 정책용자 지원, 판로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이 쉽게 사업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

## 3. 지원 내용

-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
  - \* 근거: ‘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’(산업부 고시)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판매 우대
  - 공급인증서(REC)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 부여
  - \* 근거: ‘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’(신재생센터 규칙)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우대(주민참여 가중치)
  - 설비용량 1,000kW이상 태양광발전소 중 주민참여율(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)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~20%의 가중치 우대 적용
  -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·

면·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(단,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% 미만으로 제한)

\* 근거: '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'(산업부 고시)

#### 4. 참여 대상, 자격 및 형태

##### ○ 참여 대상

- 농촌태양광 발전소 소재지 상의 읍·면·동 또는 연접 읍·면·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(신청시점) 되어 있는 농업인(어업인·축산인)

##### ○ 참여 자격

- 농업인: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
- 어업인: 수산업·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
- 축산인: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(등록)증을 득한 자(축산업허가(등록)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)

##### ○ 사업 형태

- 단독형: 농업인 1인이 단독으로 발전소 건설
- 공동형: 농업인 2~4인이 공동으로 발전소 건설
- 조합형: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설립(협동조합기본법 등) 후 발전소 건설
- 지분형: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지인(농업인이 아닌자)이 발전소 건설

\* 1인 최대 참여지분 최대 30%

#### 5. 사업추진 방법

- 사업 추진 희망 농업인(어업인·축산인)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(시공기업의 별도조건 없음)
- 단, 농협을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할 경우, 농협이 선정된 시공사만 활용가능(세부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)

## 6. 자금지원 내용

- 지원 규모 :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농촌태양광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범위 내
- 지원 조건 : 용자
  - 사업형태별 지원규모: 추후 확정 예정
  - 금리 및 상환기간: 변동금리 1.75%(‘17.5월 현재),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
  - \* 용량별 지원비율 금융지원 공고시 안내 예정
- 지원 대상 : 각종 인허가(발전사업허가, 개발행위허가, 농지전용 등)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사업
- 지원 공고 : 매년 1월 최초 사업공고 이후 주기적(격월 또는 분기별)으로 사업지원 공고 시행

### ※ 자금신청 관련 유의 사항

- 당해년도 개시일 이후(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)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 (계약일자 기준)
-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대출이 가능

## 참고

## 농촌태양광 사업 추진절차(안)

※ 농협이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추진절차	세부내용	추진(지원)주체
사전 사업성 검토	○ 지자체 인허가, 전력계통 접속 가능여부, 설치 장소 적정성, 수익성, 자금력 등 검토	농업인/시공업체
시공계약	○ 사업성 확보된 사업에 대해 시공계약 체결	농업인↔ 시공업체
인허가	○ 인허가 추진 * 발전사업, 개발행위, 농지·산지전용허가 등	농업인/시공업체
자금조달	○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(농업인) * '17년 추가공고 5월 이후 예정	에너지공단
발전소 건설	○ 발전소 시공	시공업체
사용전검사	○ 사용전검사(한국전기안전공사) ○ 전력수급계약(전력거래소 또는 한전)	시공업체
RPS 설비확인	○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설비확인 신청 ○ 가중치 부여(신재생센터)	시공업체
REC 장기계약	○ 입찰시장, 자체계약을 통해 'SMP+REC' 20년 고정가격 계약체결(사업자(농업인)-공급의무자) * 입찰시장 참여시 농촌태양광 우대	에너지공단

## □ 농촌 태양광사업 신청자격자

○ 농촌태양광 신청자격자는 다음의 ①과 ②~④ 중 하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

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·면·동 또는 연접한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(3조 1항 1호)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(사무소)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,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증명 가능

\*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 24에서도 발급가능

③ (어업인)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
-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가능

④ (축산인)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(등록)를 받은 자

- 축산업허가(등록)증 상의 축사 또는 축산시설에 설치할 경우 신청 가능